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제정: 2021.07.01.

개정: 2021.12.01.

개정: 2023.09.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와 인권·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문화의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전문학사 포함)과정 중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대원대학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전문학사포함)과정 중에 있는 자

제2장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의 책임

제3조(산학협력단의 책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 대학교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01.>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연구자제도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책임)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의 체결 및 신의와 성실에 따른 준수

2. 학생연구자의 성실한 지도 및 연구윤리·연구보안의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개정 2023.09.01.>

제5조(학생연구자의 책임)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의 신의와 성실에 따른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의 준수와 특이사항의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3.09.01.>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1.>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1.>

제8조(연구참여확약의 체결)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참여확약서는 연구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참여확약서에는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의 변경) 산학협력단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3.09.01.>
5. 기타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신설 2023.09.01.>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학업·연구활동의 병행)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월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09.01.>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09.01.>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둘 수 있다.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 금지)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1.>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09.01.>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1.>

제22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 대학교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09.01.>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 창구는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상담센터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 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학년/학기	학년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20

나. 참여과제명 :

다. 연구수행내용 :

나. 담당업무(역할) :

다. 월 참여율 : %

라.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액 : 원/월(세금포함)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3.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학과)		직 위	
연구실		연락처	

4. 기타 확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본 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바.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연구자 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본 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